

[] 편 성
[] 이 전
[] 명의 변경 신고서
[] 해 체

직장민방위대

※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		
신 고 자 (지 원 자)	성 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			
	주 소					
민 방 위 대	직장명	전화				
	소재지					
이 전 또 는 명 의 변 경 사 항	변경 전					
	변경 후					
이 전 · 명 의 변 경 · 해 체 사 유						
신 고 사 유 발 생 일						
편 성 상 황	합계			의무자	지원자	
	계	남	여		남	여

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(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제3항).
2.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(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제1항제1호)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